

Quantum Ba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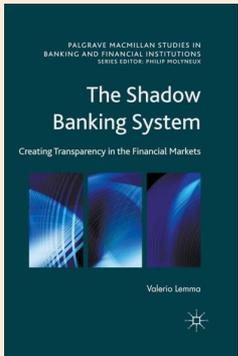
차 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자유기업원(2025.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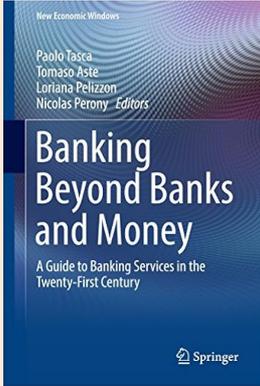
Beyond Banks



은행업은 타도의 대상인가, 한 물 간 사업인가? 그럼 그 다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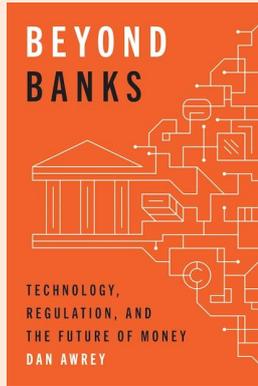
Beyond Banks (은행 너머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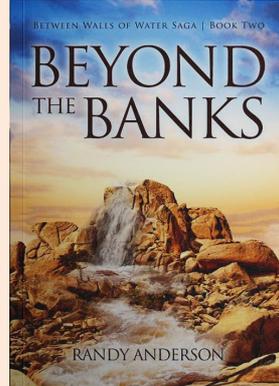
20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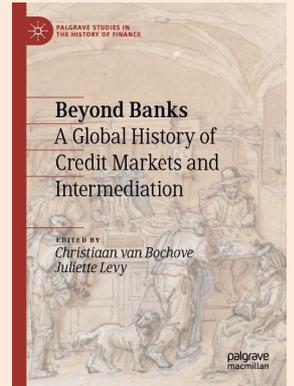
2024.9



202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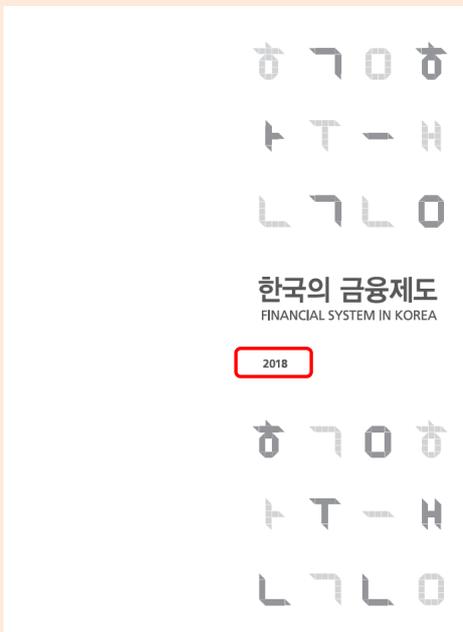
2025.1



2025.3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닐 암스트롱, 1969.7.20)

금융업의 분류



제5장 거래소제도	151
제1절 개 관	152
제2절 조 직	153
제3절 주요 업무	154
제6장 기타 금융하부구조 담당기관	157
제1절 신용보증기관	158
제2절 신용정보회사	165
제3절 신용평가회사	168
제4절 자금중개회사	170
III. 금융기관	
제1장 은행	175
제1절 개 관	176
제2절 일반은행	180
제3절 특수은행	205
제2장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19
제1절 개 관	220
제2절 상호저축은행	222
제3절 신용협동기구	228
제4절 우체예금	233
제5절 종합금융회사	234
제3장 금융투자업자	237
제1절 개 관	238
제2절 투자매매·중개업자	245
제3절 집합투자업자	255
제4절 투자자문·일임업자	262
제5절 신탁업자	264

제4장 보험회사	275
제1절 개 관	276
제2절 생명보험회사	277
제3절 손해보험회사	283
제4절 우체국보험	286
제5절 공제기관	289
제5장 기타금융기관	293
제1절 금융지주회사	294
제2절 여신전문금융회사	296
제3절 벤처캐피탈회사	304
제4절 증권금융회사	308
제5절 대부업자	310
제6장 공적금융기관	313
제1절 한국무역보험공사	314
제2절 한국주택금융공사	317
제3절 한국자산관리공사	320
제4절 한국투자공사	322
제5절 서민금융진흥원	324
IV. 금융시장	
제1장 개 관	328
제2장 단기금융시장	329
제3장 자본시장	339
제4장 외환시장	361
제5장 파생금융상품시장	366



第 2 節 一般銀行	42	1. 轉讓產業銀行	125	가. 沿革	171
1. 一般銀行制度의 特徵	42	가. 沿革	125	나. 業務內容	172
2. 業務內容	44	나. 業務現況	126	다. 資金의 調達 및 運用	177
가. 預金業務	45	2. 韓國輸出入銀行	132	2. 相互信用金庫	180
나. 貸出業務	56	가. 沿革	132	가. 沿革	180
다. 內國換算券	67	나. 業務現況	133	나. 業務內容	181
라. 外國換算券	68	3. 長期信用銀行	139	다. 業務에 대한 規制	183
마. 支店保證業務	70	가. 沿革	139	라. 資金의 調達 및 運用	184
바. 有價證券投資業務	71	나. 業務現況	140	마. 全權相互信用金庫의 聯合口	186
사. 其他業務	73	第 2 節 投資機關	144	3. 信用協同機構	186
3. 銀行二種別 現況	74	1. 投資金融會社	144	가. 沿革	186
가. 市中銀行	77	가. 沿革	144	나. 信用協同組合	186
나. 地方銀行	80	나. 業務內容	145	다. 서미금융회	188
다. 外國銀行 國內支店	83	다. 業務에 대한 規制	150	라. 相互金融	190
라. 其他 銀行關聯機關	87	라. 資金의 調達 및 運用	151	4. 遞信預金	191
第 3 節 特殊銀行	92	2. 綜合金融會社	153	第 4 節 保險機關	193
1. 特殊銀行制度의 概要	92	가. 沿革	153	1. 生命保險會社	194
2. 銀行別 現況	97	나. 業務內容	155	가. 沿革	194
가. 中小企業銀行	97	3. 投資信託會社	158	나. 業務內容	195
나. 國民銀行	101	가. 沿革	158	다. 業務에 대한 規制	197
다. 轉讓住宅銀行	106	나. 業務內容	159	라. 資金의 調達 및 運用	198
라. 互濟協同組合	113	다. 資金의 調達 및 運用	163	2. 遞信保險	199
마. 水産業協同組合	116	4. 證券金融會社	164	가. 沿革	199
바. 畜産業協同組合	119	가. 沿革	164	나. 業務內容	200
第 3 章 非通貨金融協票	123	나. 業務內容	165	다. 資金의 調達 및 運用	201
第 1 節 開發機關	125	다. 資金의 調達 및 運用	169	第 4 章 其他協票	203
		第 3 節 貯蓄機關	170	第 1 節 證券關聯機關	203
		1. 銀行信託評定	171		

은행이란 무엇인가?

- ◆ **은행의 본업(은행법 제27조) : 수신, 여신, 환업무**
 - 지급보증은 여신업무의 부대 서비스(부업)
 - 환업무는 수신의 부대 서비스(지급준비금 필요)지만 본업
 - ✓ 2010.10월 이전에는 환업무가 법이 아닌 시행령에 따라 수행

- **(질문 1) : 수신과 여신은 분리 가능한가?**
 - 예: 1960~70년대 시중은행(외국환은행) vs. 지방은행
 - 질문의 요지는 quantum banking
 - (배경)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등장

수신과 여신의 분리

- ◆ 여신전문업 : 신용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대부업자
 - 즉, 여신만 취급하면 은행 아님
- 그렇다면, 수신만 취급하는 내로우 बैं크(narrow bank)는?
 - narrow bank는 국채 또는 지급준비금만 보유(대출은 포기)
 - ✓ 버블을 초래하는 신용팽창의 근원적 해결책
 - 신용창출기능이 없는 Narrow bank도 은행이라면, 은행업의 본질은 여신이 아닌 수신

(참고) 각국의 은행법은?

- ◆ 영국(*Banking Act 2009*, Part 1, § 2("bank"))
 - 은행업의 핵심은 예금 수취(deposit-taking). 대출은 선택
 - 한국(은행법 제27조)도 비슷
- ◆ 미국(26 U.S. Code § 581 "Definition of bank")
 - 은행업은 수신과 여신을 병행하는 사업(수신만 수행 불가)
 - 일본(은행법 제2조), 프랑스(통화금융법전 L.311-1)도 비슷
- ◆ 독일은 불분명
 - EU CRR(규정 575/2013) 제4조(1)1에서는 여수신 병행을 의무화
 - 그러나 국내 은행법(KWG §1)에서는 수신만 수행 가능

Narrow bank는 위험한가?

- ◆ 90년 전 시카고 학파 : NEVER! (오히려 모범적, 이상적)
 - 대공황의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100% money(Chicago Plan)
 - ✓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Chicago Plan(이상적) 대신 예금보험제도(현실적) 채택
- ◆ 21세기의 미 연준 : CERTAINLY!
 - 기능적 측면 : 은행이 대출을 포기(신용창출 기능 중단)하면, 경기가 수축되고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교란에 빠짐 즉, 금융안정을 크게 저해
 - 윤리적 측면 : 은행의 대출 포기는 태업이자 불로소득 추구행위
- (포인트) 은행업의 본질에 대해서 시카고 학파는 수신(여신은 선택사항), 미 연준은 여신(필수사항)으로 파악

<참고> 미국의 The Narrow Bank 논란

- ◆ The Narrow Bank(TNB)
 - 2017.8월 코네티컷주 설립 인가 (인터넷 전문은행)
 - CEO: James McAndrews
 - ✓ 뉴욕 연준 economist 출신
 - 자금운용 : 100% 연준 예치
 - 수입원: 연준의 지급이자!
 - ✓ 2008.10월부터 지준금에 이자 지급
 - 2018년 연준에 예금계좌 개설 신청

A narrow bank is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issues demandable liabilities and invests in assets that have no nominal interest rate and credit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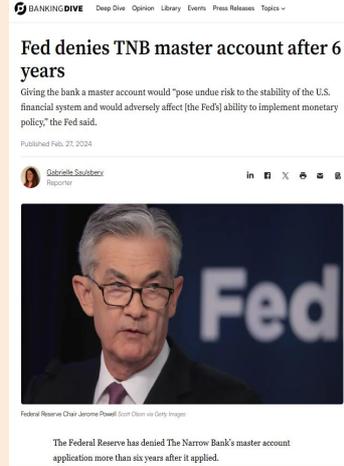
TNB is "The Narrow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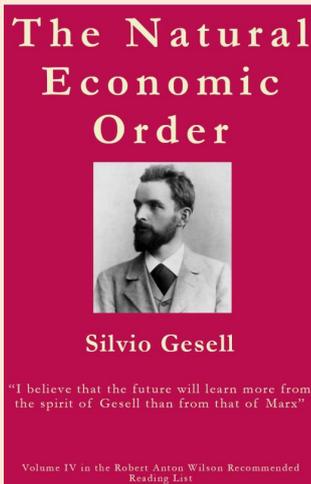
TNB seeks to serve institutional customers by offering safe depository services at attractive interest rates.

◆ 2024.12월 연준은 TNB의 계좌개설 신청 반려

- 이유: --
 - 시장의 추측 :
 - ➔ TNB 모델은 상업은행의 기업 대출 축소 유발
 - ➔ 투자/고용 축소, 경기 후퇴
 - ➔ 통화정책 불안정(파급경로 훼손)
 - ➔ “불로소득 추구”
 - 헌법적 문제로 비화 중
 - ✓ 주정부가 허가한 은행의 영업을 연준(연방정부)이 방해
- 연준은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대출)을 옹호



은행의 신용창조(대출)은 나쁜 것.....



Silvio Gesell
(1862~1930)
바바리언소비에트공화국 재무장관
강제적 마이너스 금리 주장



Frederick Soddy
(1877~1956)
1921년 노벨화학상 수상
은행의 대출기능 박탈 주장



Major C.H. Douglas
(1879~1952)
엔지니어, 사회운동가
사회신용(기본소득) 주장

차현진의 제안(2025.9)

- ◆ **스태이블코인 발행의 효과**
 - **국채발행 용이 but 은행의 신용 창출 능력 저하**
- ◆ **발행 자격 : 제한 필요**
 - **IT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산분리 원칙 위배**
 - ✓ 필요시 발행량도 통제 (예: 1984~97 CD 발행)



한국의 방향은?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턱 낮춘다...자본금 50억서 5억으로 하향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5-06-09 20:48

2 0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 제정에 나선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원화스테이블코인 '은행·비은행 컨소시엄'에 발행 권한 준다

김근욱 기자 | 2025.09.08 오전 05:30

발행 인가 및 관리·감독은 'F4' 격상 시킨 '금융안정협의회'로
여당서도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목소리...금융위, 10월 법안 목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로스쿨 5000서사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금융안정협의회를 꾸리고 금융포털 디지털금융 G2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7.22/뉴스1 © News1 민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권한을 은행과 비은행이 공진 컨소시엄에 주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발행 인허가 권한은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이피모건, 비트코인·이더리움 담보 대출 상품 검토... 2026년 도입 가능성

김민준 기자 | 2025.07.22 (화) 18:58

제이피모건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형은행들이 암호화폐 실물경제 활용에 본격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이피모건, 비트코인·이더리움 담보 대출 상품 검토...2026년 도입 가능성 / TokenPost.ai

제이피모건제이(JPM)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같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대형은행들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태도가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제이피모건이 2026년까지 암호화폐 기반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내부 논의 중인 단계로 최종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日 최대 은행, 내년부터 토큰화 예금 출시... 블록 신호탄

조선문 기자 | 입력 2025-09-13 10:01

아사히신문 "유초銀, 개인고객 대상...예금보험 적용하지만, 이자 지급은 없어"



일본 유초은행 홈페이지 (사진=유초은행 홈페이지 캡처)

일본 최대 국영 금융기관인 일본 유초은행(Japan Post Bank)이 내년부터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s)'을 본격 도입한다. 제도권 거대은행의 가상화폐 블록체인 진입으로 눈길을 끈다.

13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우체국(우정국) 계열 금융기관인 유초은행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개인 고객들이 기존 저축 계좌와 연동된 전용 디지털 계좌를 통해 '엔화 디지털 화폐(DCJPY)'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DCJPY는 도쿄의 핀테크 기업인 데커렛 디씨피(DeCurret Inc.)가 개발한 플랫폼으로, 엔화와 1:1로 교환된다.

이자장사 넘어 토큰 장사로?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새판 짜기

이선영 기자

입력: 2025.09.02 00:00 / 수정: 2025.09.02 00:00

서울-테러 방한에 4대 금융 수정 연쇄 면담
정부 10월 제도화 예고, 한은 예금토론 실거래 시점 결과 점검



신한·하나·KB·우리 등 주요 금융그룹은 최고경영진 또는 임원급 접촉을 이어갔고 정부는 10월 원화-외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2단계 제도안을 국회 제출 목표로 준비 중이다. / Getty Images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뜻은?

- ◆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 FDIC(연방 예금보험공사)가 전직 임원과 이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형사처벌은 면제)
- ◆ 2022년 5월 테라-루나 파산
 - 미국 법무부가 즉각 권도형을 사기죄,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
 - Why? 예금수취는 소비임치 계약,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신탁계약 (법이 중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뜻은?

- ◆ 견해 1: 그냥 토큰예금(tokenized deposit)
 - 은행업(본업)의 일종
 - 예 : CD(양도성예금증서)
 - 스테이블코인은 대출의 원천
- ◆ 견해 2: 신탁계약(국채, 지급준비금에 운용)에 따른 신통 사업
 - 스테이블코인은 대출 재원이 될 수 없음(미국 GENIUS 법)
- 한국은행(프로젝트 한강)의 생각은???

금융기관 자금조달의 법적 성격

- ◆ 은행의 예금 수취(우체국예금) : 소비입치계약
- ◆ 보험사의 보험 판매 : 위험부담 이전계약(risk transfer)
- ◆ 자산운용사의 펀드 판매 : 신탁 + 위임(투자위탁) 계약
- ◆ 증권회사의 CMA 관리 : MMF형(신탁), RP형(매매), 발행어음형 (소비입치)

소비입치계약의 등장 배경

- ◆ 기독교적 세계관
 - “물건이나 돈이나 공짜로 빌려준다”(가난한 이웃을 형제처럼....)
 - ✓ 즉 매매가 아니면, 돈을 주고 받지 말라!
 -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대차(*commodatum*)는 허용
 - ✓ 예외 : 賃대차(*locatio conductio rei*)
- ◆ 따라서 소유권 이전과 보상이 전제되는 소비대차 (*mutuum*)은 엄격히 금지
 - 대부업 및 이자수취 금지의 배경

중세의 금융규제회피법

- ◆ 소유권 이전 불인정
 - usura = use(용통)
 - **depositum irregular (소비임치) : 세탁소의 옷수선, 발렛 파킹**
- ◆ 이자는 수고료(사전 확정 불가능)
 - **depositi a discrezione = discretionary deposit(재량예금)**
 - **Intereo, interisse = interest (to be lost, 잃을 수도 있었던 것)**

모순

- ◆ 1342년 환전상(은행)의 파산
 - “재량예금도 소비임치와 다르지 않다. 소유권이 넘어갔다”
 - 따라서 예금주는 여타 채권자들보다 우선권이 없다
 - **1515년 레오10세가 이자수취 합법화(피에타법)로 해결**
- ◆ 1672년 영국 찰스2세의 채무불이행 선언(130만 파운드)
 - 대여금 반환 소송 vs. 불법 점유 동산 반환 소송
 - **1848년 영국 대법원 판결로 해결(소비임치라는 개념 불인정)**
 - ✓ 한국의 민법 제702조 : “소비임치 = 소비대차”

소비임치 = 소비대차 라면?

- ◆ 은행 예금 = 차용증
 - 은행업 = 증권업 (구분 불가능)
 - 예금보험제도도 설명 불가
- **결국은 이슬람뱅킹이 결론???**
 - 리바(Riba, 초과/증가라는 뜻. 기독교의 이자)는 불허
 - Wadiah(입출금계좌)는 허용하되 무이자(소액 hibah는 허용)
 - Mudarabah(MMF), Musharakah(공동 투자)로 투자수익 분배
-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예찬론, 이재명 대통령의 예대금리차 축소 요구는 결국 이슬람뱅킹 지지????

결론

- ◆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가 공존하려면
 - 수신전문은행(**quantum banking**)의 허용(원칙론) or
 - 은행 예금은 소비임치, 코인 발행은 신탁 계약으로 분리(현실론)
- ◆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좌파 경제학(F. Soddy)의 시작?
 -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 중단/수축
- ◆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이슬람뱅킹의 한 측면
 - 스테이블코인 구매자는 Wadiah 보유자(이자소득 포기)
- ◆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촉발된 소비임치 개념의 해체는 이슬람뱅킹化의 시작(**어쩌면 초기 기독교 세계관으로의 복귀**)
 - 은행업과 증권업의 차이는 자본금
 - 금산분리 원칙도 해이

차현진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

스태이블 코인 초래 금융혁신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스태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현실적 제안

2025.9.26

전홍택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1

- 차현진교수의 발표는 금융제도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 스태이블 코인이 초래하는 금융 혁신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경제학·법학·철학·종교윤리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
 - 또한 스타이블 코인 도입에 있어서 금융 혁신과 안정의 균형이라는 난제에 대해 **현실적 정책 대안**을 제시
- 학술적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깊은 함의 가짐

2

▶스태이블 코인이 가져오는 혁신에 대한 차현진교수의 다양한 시각의 해석

1. 좌파 경제학(Frederick Soddy)과 스타이블 코인

- 소디는 방사능 연구 등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으며, 경제학 분야에서는 주로 화폐와 금융제도 문제를 과학적·실증적 관점에서 분석한 경제사상가.
- 금융부채와 은행의 신용 창출이 실물 경제의 자원의 한계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점을 비판하고, 이를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정의 근본 원인으로 봄
- 그는 **은행의 100% 지급준비금 제도 도입 등 금융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
-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좌파 경제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고, 강한 금융 규제 요구는 국가의 역할과 개입 확대를 중시하는 좌파 경제학적 특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으나

3

•소디는 경제 전반의 균형과 과학적 논리에 기초해 금융 시스템 문제를 진단했으며, 재분배 정책이나 국가 주도의 광범위한 금융 통제보다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건전성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수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형적 좌파와 구별됨

•전체적으로 보면 학문적 실증과 금융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중도적 혹은 개혁주의적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스태이블코인은 담보 자산(주로 국채, 법정 화폐 예치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며, 신용창출 기능이 크게 제한됨.

•이 점에서 스타이블코인 발행은 Soddy가 주장한 "무분별한 신용 창출에 대한 대응"과 일맥상통하며, 기존 금융 시스템 내 과잉 신용 문제를 보완하는 새로운 통화 모델로 평가할 수 있음.

4

- 이에 더해 소디가 지적한 은행 신용창출의 과도한 팽창이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 금융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문제 인식은 CBDC 도입 필요성의 핵심 배경의 하나.
- 특히 소매형 CBDC는 중앙은행 주도의 안정적 화폐 유통을 가능케해 경기변동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5

2. 우파 경제학(Hayek)과 스테이블 코인: 새로운 시각

-Hayek의 사적 화폐경쟁 모델: Denationalization of Money

- 하이에크는 국가 화폐 독점 폐지와 경쟁적 사적 화폐 공급을 강조
 - 소비자들은 안정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화폐를 선택하게 됨.
 - 경쟁하는 사적 화폐들은 투명한 운영과 견고한 기반 기술로 신뢰를 확보해야
 - 화폐 공급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책임 있고 신뢰할 만한 화폐를 공급할 수밖에 없으며, 비효율적·신뢰할 수 없는 화폐는 시장에서 도태.
 - 실제 네트워크 효과, 진입비용, 담합 가능성 등으로 인한 시장 집중화 가능성으로 인해 완전 경쟁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
 - 규제 개입은 적정선에서 가능하면 최소화
- 스테이블 코인은 Hayek가 제안한 사적 화폐 경쟁의 한 형태

6

2. 우파 경제학(Hayek)과 스테이블 코인: 새로운 시각

-스테이블코인 도입 지지와 우파 경제학

- 자유시장주의: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 경쟁과 개인선택 자유확대를 중시

-특히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는 법과 CBDC 금지법이 함께 하원을 통과하여 하이에크의 화폐 경쟁 이론과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

- 공통점: ①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과 규제 지원은 민간 디지털 화폐를 인정하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
②CBDC 직접 발행을 금지한 것은 중앙 정부 개입을 축소한다는 점
- 차이점: ①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병행,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중시
②CBDC 반대는 프라이버시, 권력집중 우려와 기존 금융권 보호 등 현실적인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

7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차현진교수의 현실적 정책 제안

1.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뜻은,

- 견해 1: 그냥 토큰예금(tokenized deposit): 은행업의 일종(예: CD)
- 견해 2: 신탁계약(국채, 지급준비금에 운용)에 따른 신종 사업
- 한국은행(프로젝트 한강)의 생각은???

2.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금산분리의 훼손, 외화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총액은 한은이 관리.

-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은행부터 허용하고 비은행권은 단계적·점진적으로 허용.

8

3. 스테이블 코인을 토큰 예금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 도입과도 관련된 문제임.

-디지털 화폐 도입 방식은,

- ① 중앙은행 주도로 CBDC 발행(도매형 CBDC부터, 소매형 CBDC?)과 예금 토큰화 실행
- ② 민간 주도 은행 예금의 디지털 토큰화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확대

-BIS는 중앙은행 준비금, 상업은행 예금, 정부 채권 등 전통적 자산을 블록체인 등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토큰화해 금융 거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실험 진행중.

•또 CBDC와 토큰화된 예금, 토큰화된 기관용 화폐(wholesale CBDC) 모두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며, 각국의 법률·시장 현실에 맞춘 다양한 응용모델을 실험중.

•따라서 우리나라도 더 깊은 연구와 실험 필요

9

-한은의 프로젝트 한강 실험결과와 평가

•2025년 상반기 진행된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은 금융 시스템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낮은 사용자 참여율과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 구도로 인해 2차 테스트가 잠정 보류되었음.

•참여율 저조: 7개 시중은행과 10만 명의 사용자가 참여했지만, 실험 기간 동안 개인당 하루 평균 사용액은 100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

예금 토큰 지급 개설 수도 목표치에 미달한 8만여 개에 그쳐,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제한적인 활용성: 기존의 간편결제 시스템이 이미 매우 편리하여,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에서는 CBDC 사용의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음.

10

- 실시간 결제 및 수수료 절감: CBDC를 사용한 결제는 판매자에게 현금처럼 즉시 정산되어 유동성을 높이고, 카드 결제에 비해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확인되었음.

- 선제적 기술 검증: 한국은행은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토큰화된 예금 시스템의 기술적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평가 및 향후 계획

- 민간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 민간 금융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면서 CBDC와의 역할 중복 및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한국은행은 2차 테스트를 잠정 보류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와 제도화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음.

- 한계에 대한 비판: 일부에서는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실험이 시장에 별다른 파급력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음.

11

- 정책 방향 재검토: 한국은행은 1차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기존의 2차 테스트 대신,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 검증(PoC)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 CBDC 연구 지속: 프로젝트 한강의 보류가 CBDC 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은행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 및 노력을 지속할 것임.

-결론적으로, '프로젝트 한강'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낮은 사용자 참여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해 CBDC의 상용화 경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남겼음.

- 앞으로는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병존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12

4.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법의 여러가지 대안이 검토 중인데 쟁점은

-발행기관에 비은행 기업 포함 여부(미국은 금융기관 중심)

-법적 지위(결제수단 VS 금융상품)와 감독 주체와 감독 분담 범위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 허용 여부

-지급준비금과 담보 요건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불법 자금거래 감시 강화

13

Comment

문우식

스테이블코인

- 민간이 창조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은 높은 가치 변동성 문제로 지급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기존 통화와 안정적인 교환관계를 통해 디지털 화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 스테이블코인이 출현.
- 가치가 연동된 자산이 없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연동된 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시스템 내에 좀 더 쉽게 통합됨.
- 스테이블코인은 암호자산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암호자산과 금융자산을 연결시키는 암호자산 거래통화임

2

최근의 입법동향

- 우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더불어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채 수요를 확대하며 달러화의 디지털패권을 유지토록 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합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섬.
-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은 이른바 '크립토 3법'으로 불리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법(GENIUS Act)',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CLARITY Act)', '反 CBDC 감시국가 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일괄 통과시킴.
- 이중 GENIUS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한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연방 암호화폐 법률로서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100%준비금 보유 의무를 지며, 미국 달러와 달러 국제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해야 하며 또한 연방 또는 주 규제 기관의 사전 이가제가 도입되었고, OCC(미국 통화감독청), 연준 등 주요 기관의 감독 권한이 확립.
- 한편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이 대폭 강화되고 무허가 스테이블코인의 3년 내 미국 내 유통이 전면 금지됨. 비보증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도 완전히 금지됨.

3

- 한편 EU는 2024년 포괄적인 가상자산규제법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제정하여 준거통화의 상환을 약속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준거통화가 단일통화인지 복수통화인지에 따라 전자화폐 토큰(e-money tokens) 및 준거자산형 토큰(asset-referenced tokens)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인가제도와 준비금, 보고 의무 등의 엄격한 규율체계를 마련함.
- 특히 단일통화에 준거하는 이머니토큰의 경우 발행인을 EU 역내의 금융기관 또는 전자화폐기관(Electronic Monetary Institution)으로 제한하고 배서 등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EU에서 MiCA법을 준수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등록된 기업은 5개사, 이중 유로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관은 EURC, EURCV 등 3개임.
- 이에 반해 일본은 2023년 지급결제법(Payment Services Act)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했으나 아직 활성화안됨

4

- 한편 우리나라는 2023년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규율했으며, 최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발의된 상태임.
- 예컨대 최근 발표된 의원 입법안은 자기자본 5~10억 원 이상의 은행 이외의 법인도 발행이 가능하며, 대통령직속 또는 금융위 산하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하고 있음.

5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비교

	민병덕안 (기본법)	안도걸안	김현정안	이강일안 (혁신법)	강준현안 (금융위 예상안)
자기자본금 요건	5억원	50억원	50억원	10억원	10억~20억원
발행 주체 제한	대한민국 설립 법인	주식회사+ 금융기관	주식회사+ 금융기관	인가받은 사업자	인가 받은 사업자
이자지급	허용	금지	허용	허용	조건부 허용

※ 출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

자료: 이투데이 9월8일

6

상업은행 예금의 토큰화

- 미국에서는 JPM코인과 USDF를 발행
 - JPY Coin은 미국의 대형은행인 제이피모건(JP Morgan)이 2020년 은행권 최초로 발행한 블록체인예금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허가형 전용블록체인을 사용.
 - USDF는 2022년 초 미국의 뉴욕 커뮤니티은행(New York Community Bank)을 비롯하여 9개 민간은행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발행하기로 한 토큰화 예금
- 일본에서도 MUFJ은행은 2023년 6월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프로그맷코인(Progmatt coin)을 발행하고 토큰증권(Security token)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교환과 청산에 사용하기 시작

7

한국은행 한강프로젝트

- 한국은행은 2025년 3월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디지털 화폐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함.
- 이에 의하면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tokenised wholesale central bank money)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은행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예금 토큰'(tokenised commercial bank deposits)을 발행.유통해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
- 한은과 7개 은행은 지난 4월 금융소비자 10만명을 대상으로 1차 테스트를 시작해 6월 말 마무리.
- 테스트에 참여한 시중은행은 한강 프로젝트 관련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등에 적게는 30억원, 많게는 60억원 가까이 투자. 비용문제로 2차 테스트는 유예된 상태임

8

통합원장(Unified Ledger)

- BIS 사무총장 Augstin Carstens은 2023년 11월 한국은행에서 행한 연설 "The Future Monetary System: From Vision to Reality"에서 통합원장을 제안
- 통합원장은 금융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원활하게 함께 작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로 통화시스템을 쓰는 자산들과 결합시켜 자산거래시 즉시 지급, 청산 및 결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초거대 만능 거래성사되는, 스마트계약과 레고블록처럼 조합해 개인별 최적의 투자조합자를 만들수 있는 조합가능성(composability)을 활용할 수 있음.
-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면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모든 거래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고 매끄럽게 통합시켜 거래를 지연시키는 수작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금융의 개인화(democratisation of finance)가 가능.

9

향후 우리나라의 과제

-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원화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하여 수요문제 및 외환규제 문제가 발생, 이를 위해서는 원화국제화 추진 (적어도 소액거래).
- 발행기관에 대한 인가와 관련해서 은행은 아니라도 적어도 EU의 전자화폐기관에 해당하는 규제 필요.
- 금융시스템 불안에 따른 최종대부자 역할을 중앙은행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로 CBDC를 통해 토큰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원장을 구축할 필요.

10

Selected References

- 문우식 (2025) 화폐: 금속화폐에서 지폐와 디지털통화까지 돈의 진화사, 서울대 출판부
- Moon, Woosik (2026) Digital Payments and Cashless Economy: Perspectives from Korea, Routledge.
- Carstens (2023) The Future Monetary System: From Vision to Reality

11

Banking & Stablecoin

2025. 9. 26.

신 성 식



ICT전략연구소
기술전략연구센터

‘Stablecoin & Quantum Banking’ 발표자료 이해하기?

Banking & Stablecoin

- **핵심 주제:** 은행의 본질(수신 vs. 여신)과 스테이블코인 등장
- **주요 논점**
 - 은행의 핵심은 수신(예금 수취)인지 여신(대출)인지에 대한 논쟁
 - Narrow Bank와 스테이블코인의 유사성: 신용 창출 기능이 없는 ‘수신전문은행’
 - 각국 법제 차이: 영국(수신만), 미국(여수신 병행 필수)
 - 스테이블코인 발행 효과: 국채 발행 용이, 은행 신용창출 능력 저하
 - 법적 성격 차이: 예금: 소비임치 계약(소유권 이전, 대출 원천)
스테이블코인: 신탁 계약(자산 담보, 대출 불가)
- **결론**
 - 은행 예금과 코인 발행을 법적으로 분리해야 공존 가능
 - 스테이블코인: Narrow Bank적 성격, 금융 안정은 강화하나 통화정책과 자본시장 구조에 큰 파급

Stablecoin 수용

- **문제 제기**
 -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안스태이블 코인’
 - 가치 하락, 코인런 위험, 예금자보호 제외
- **긍정적 측면**
 - 대출 없는 은행, 금융 안정에 기여 (Narrow Bank와 유사)
 - 버블 예방 효과
- **부정적 측면**
 - 은행 신용중개 축소, 기업 대출 위축, 금리 상승
 - 통화정책 파급 경로 왜곡, 중앙은행에 큰 부담
 -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 (IT기업의 사실상 은행업 진출)
 - 외환 유출·자본 이동 관리 취약
- **정책 제언**
 - 은행 발행은 즉시 허용 가능 (전자 수표와 동일)
 - 비은행 발행은 안전장치 마련 후 점진적으로 허용
 - 한국은행이 총량 관리 필요 (1984~97 CD 사례처럼 단계적 확대)

코멘트

- 예금과 코인의 법적 차이 명확
- Narrow Bank 논쟁은 과거부터 이어진 '금융 안정 vs. 경기 활성화'라는 오래된 딜레마를 보여줌
- 한국의 경우 금산분리 원칙, 외환관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IT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은 제약 필요

질문

- 한국은행(프로젝트 한강) 입장: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토큰예금(tokenized deposit)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신탁계약인가? 양립 가능한가?
-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통화정책 프레임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경우, 외환 유출 관리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
- 'Quantum' Banking?

THANK YOU

차현진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된 제안

2025.9.26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제가 이해한 제안의 취지와 요체

-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허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
- 이를 내로우 बैं킹을 어떻게 금융 시스템에서 이해하고 포용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로 재해석
- 내로우 बैं킹은 득과 실 양 측면
 -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안전 자산의 tokenization + 신용시스템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
 - 경제에 공급되는 신용의 수축, 이행기 통화정책의 교란
- 점진적 확산을 제안

남는 질문들

- 허용하지 않는다면?
 - 토큰화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해외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져 나가게 될까?
 - 국내자본의 투자기회 손실? 얼마나 클까?
 -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손상될까?
- 보다 더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한다면?
 - 적자생존으로 더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마련할 수 있을까?
 - 중앙은행이 더 발빠르게 통화정책면의 도전에 대응할 수는 없을까?
- 스테이블 코인 vs 크립토 vs 컨벤셔널 통화
 - 범죄/탈세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라는 측면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을까?
 - 차이가 있다면 혹은 없다면 양자의 화폐로서의 위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

- 60-70년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차이는?
- 여신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업 (신용카드회사, 대부업자) 가 은행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이유는?
- 90년전 시카고 학파는 내로우 뱅크를 이상으로 봄. 90년 이후의 시카고 학파는?